

2019년 제3차 기록관리 정책포럼 개최 결과

□ 포럼 개요

- (주제) 기록관리 관점에서 본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 사회 : 김형국 과장(국가기록원)
 - 발표 : ① 비공개 상한제도의 도입에 수반한 법적 쟁점 / 김창조 교수(경북대)
② 기록물의 적극적 공개를 위한 비공개 상한제도 도입 방안 / 문현숙 사무관(국가기록원)
 - 토론 : 박지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하명 교수(경북대), 장 신 상임연구위원(역사문제연구소)
- (일시/장소) '19. 9. 18.(수) 14:00~17:00 / 행정기록관 2층 세미나실
- (참석) 총 114명
 - (내부) 원장, 기록정책부장, 연구협력과장, 관련 담당자 및 관심 직원 30명
 - (외부) 토론자, 기록관리 관련 기관 담당자 등 84명
 - ※ 공공기관(21명), 중앙행정(19명), 교육청(16명), 지방행정(14명), 군기관(5명), 영구기록물 관리기관(2명), 대학기관(1명), 일반(6명, 대학교 3명 / 기타 3명)

□ 주요 논의 내용

- 비공개 상한제도 도입에 수반한 「정보공개법」 과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법적 쟁점 사안 비교 · 분석 및 상한제도 설계의 정합성 확보
- 해외 사례 및 관련 법령,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검토 · 분석을 통한 비공개 상한제도의 운용 방향 및 상한기간 지정 방안 모색
- 비공개 상한기간의 적절성 및 적용 시점, '개인식별정보'의 개념 정의, 가해자 관련 판결문 공개 가능성, 형식비와 실질비의 구분 및 적용의 판단 기준, 직무수행 상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공무원의 면책 가능성, 조선총독부 문서의 보호 여부, 공익에 부합하는 학술 연구 기반 마련 등

□ 향후 계획

- 제8차 기록관리 연구세미나(국가기록원 2동 207호 중회의실) : '19. 10. 16.
 - ※ 공개재분류 업무절차 개선 및 결과물(기준서) 활용 방안

○ (박지환 변호사) ① 비공개 상한제도의 도입 취지는 보다 많은 기록물의 공개에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특별법인 「정보공개법」이 우선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런 점에서 실무 차원에서 비공개 상한제도를 적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며,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영역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② 「정보공개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 개인적으로 있으신지 궁금함.

⇒ (김창조 교수) 「개인정보 보호법」은 권리주체가 되지 않는 사자(死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주관법이고, 「정보공개법」은 당사자가 죽더라도 제3자의 청구가 가능한 객관법임. 사자의 정보는 사자의 친척이나 관계자 이외에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남았을 경우 인간존엄 차원에서 보호하자는 것임. 인격의 공공성 정도에 따라 보호밀도 자체가 살아있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특성에 따른 보호밀도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③ 사건기록과 판결문 공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최근의 추세를 볼 때 비공개 상한제도 도입 시 성범죄, 가정보호사건, 청소년사건의 범죄이력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해당 기록물과 판결문에 적시된 재판의 당사자인 가해자를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해야 되는지는 의문임.

⇒ (문현숙 사무관) 국가기록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기록과 판결문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음. 사건기록의 경우 진술, 증인조서, 신문조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해자 식별과 피해 정도 파악이 가능하므로 실제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영역을 구분짓기 어려워 판결문과 함께 비공개하고 있음. 다만 말씀하신대로 기록물 생산 시점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국가기록원도 공개를 구분해서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④ “개인식별정보” 정의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의 정의에 비추어 개념상 혼란을 줄 수 있는 명칭이므로 다른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 (문현숙 사무관) 발제문에서 제시한 ‘개인식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그 외의 개인식별정보를 총칭하는 표현임. 말씀하신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식별정보”의 정의와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며 검토하겠음.

○ (정하명 교수) ① 기록물의 공개와 정보공개 제도는 서로 다르지만 기록물 공개의 근거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두 제도를 동일 선상에서 파악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함.

=> (김창조 교수) 기록물관리에 대한 일반 규정을 두고 거기에서 공개 및 이용에 관한 것을 나누자는 것임. 두 제도가 일치하는 부분도 있음.

② 미국의 경우 기록물을 이관 받으면 동시에 실질비 여부 판단 권한까지 이관 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에 반해 우리는 기록물을 이관 받을 때 기록물의 비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받은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음.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공무원이 기록의 실질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전문성이 다소 염려스러움. 그런 점에서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했을 때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면책이 가능한지.

=> (김창조 교수) ① 형식비는 공개하지 말라는 일종의 명령으로 공개 시 법적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정보공개 담당자는 그런 부분에서 면책된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실질비로 한다고 했을 때 기관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관 상호 간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나 방식 등을 정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설치하면 좋을 듯함.

③ 특수기록관 생산 기록물의 경우 이관 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상한기간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관 시 기록물에 대한 비공개 상한기간의 설정 권한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한다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거나 혹은 특수기록관과의 협의를 통해 상한기간의 설정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문현숙 사무관) 기본적으로 특수기록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생각이며,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서 형식상 비밀이나 내용상의 비밀에 해당되는 기록물이 비밀이 아직 해제되지 않으면 포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음. 현행 법령에서 특수기록관 기록물은 30~50년까지 기록물 이관연장이 가능하고 연장 시기가 특수기록관과 합의된 부분으로 이해됨. 다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법률상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 영역에서만 비공개 보호기간이 지정되면 그것 때문에 생산기관의 이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더 필요할 것임.

④ 제시하고 있는 비공개 상한기간이 다소 장기화된 감이 있음. 국가안보 관련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 30년 공개원칙을 적용하되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평가를 통해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 설계가 기록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됨. 단순히 기록을 보존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록을 활용하고 기록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균형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봄. 그런 점에서 미국처럼 유전병 관련 기록물도 개인의 치료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문현숙 사무관) ① 30년 공개원칙은 모든 기록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국가안보 관련인 경우도 예외는 아님. 30년 공개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에서 비공개로 이관연장을 요청하고 있고, 이관되지 않아 공개원칙에 적용되지 않는 기록물에 대해서만 비공개 상한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임.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30년 공개원칙 전에도 생산기관의 의견조회를 통한 재분류를 통해서 적극 공개하고자 하며, 다만 생산기관에서 연장을 필요로 하거나 저희 판단도 그러하면 계속 연장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한기간을 어떻게 봐야할지를 고민하고 있음.

② 희귀유전병 관련 기록물의 공개는 미국과 달리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현행 법령에도 공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기록물은 열람 청구가 가능하고, 비공개 상한은 제3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것이므로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전체적으로 상한대상이 끝났을 때 다 공개하는 부분은 국민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반영하겠음.

○ (장 신 상임연구위원) ① 1945년 생산된 공공기록물의 대부분은 조선총독부 문서로 생산 주체가 일본 정부인데 그럴 경우 법률에서 보호하는 대상인 ‘국민’ 또는 ‘개인’의 범주에 일본을 비롯한 외국인도 해당되는 것인지.

=> (김창조 교수) 「헌법」상의 주어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임. 인권 자체가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권리임. 이럴 경우 정보공개 청구는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권리임. 기록물 생산주체가 일본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주체인 국가기록원에서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든지간에 법령에 따라서 동일하게 관리된다고 봄.

② 사망자의 정보는 사망자의 정보인 동시에 유족의 정보로 생존하는 유족의 정보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고 있지만 사망자의 정보이면서 유족의 정보는 매우 포괄적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상 개인에 대한 ‘사회적 기억이 남아 있는 동안은 인간 존엄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하지만 ‘사회의 기억’이라는 표현도 모호함. 시행령이나 내규를 정할 때 구체적인 예시가 없으면 행정 편의에 따라 비공개되기 쉽고, 면책 특권이지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을 것임.

=> (김창조 교수) 유전정보의 경우 상당기간 동안 문제가 될 수 있음. 이런 부분은 과학적 정당성보다는 민주적 정당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임.

③ 연구를 위해 집단(직업군, 학적부, 수형자)을 대상으로 한 기록 전체를 청구할 경우 유명인을 제외하고 정보공개 대상의 사망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임. 그럴 경우 청구인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누가 확인하고 책임져 줄 것인지 궁금함.

④ 비공개 상한제도를 시행령에 반영할 경우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사항은 관련 기관과의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측됨.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국가기록원 자체의 지침 혹은 내규를 마련하여 개인정보의 비공개 상한을 정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함.

=> (문현숙 사무관) 비공개 상한기간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사항임.

내규로 정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함.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헌법기관이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포함하려면 저희 내규로는 어렵지 않을까 함. 성격별로 유형화해서 예규가 아니더라도 시행령으로만 일부 먼저 진행하는 것이 내부 검토과정에서 나온 의견임. 국방, 외교, 안보와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가 어렵다면 현재 소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련 기록물을 먼저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함.

⑤ 우리나라의 경우 전쟁으로 인한 기록의 망실(亡失)로 개인의 출생이나 사망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제도 운영상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록물의 생산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다고 봄.

⑥ 최근의 학술 연구는 기존의 민족이나 국가 중심에서 개인을 비롯한 소수자 문제, 환경 문제 등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민사 쪽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 개인의 신체정보를 담은 학적부와 같이 당대의 사회를 설명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자료들을 왜 묶어두는 것인지 여전히 충돌하고 있음. 또한 과거에는 지리정보가 중요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단체 혹은 사람의 이동 등을 지도에 배치하는 것이 주요 연구성과로 공개하는 것이 큰 흐름이 되고 있음. 이처럼 학문은 계속 발달하고 사회적 요구가 달라지고 있는데 국가기록원이 지리 관련 식별정보 등을 제외하는 것은 기준 자체가 과거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함.

=> (문헌속 사무관) 「공공기록물법」 제37조 제1항에는 비공개 기록물 열람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학술연구도 포함되어 있음. 다만 현재 열람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개인정보 부분이 가려져서 제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장기과제라고 생각하고 학술 연구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열람이 온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본 제작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함. 뿐만 아니라 다른 예외 장치로 독립운동, 농지개혁, 지적 관련 기록물 등 역사적인 사건이나 시기를 구분해서 기획 재분류를 해왔고 강제연행자명부 관련 기록도 추가 진행할 예정임. 향후에도 관심 있는 역사적 사건 등을 선정해서 재분류해 나갈 계획임.

⑦ 개인정보 관련 기록물의 사안별 상한기간 설정은 동의하지만 독립운

동가 관련 신문조서나 판결문 등이 공개된 것처럼 학술 연구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한 예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함. 아울러 비공개 상한기간 설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 시 혹은 재분류 심의 시에 관련 학계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서 자료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개되었을 때 분위기나 피해 등을 기관에서 설명하면서 조절하면 낮지 않을까 함.

- (박지환 변호사) 개별 사항에 대해서 어디까지 공개하고 비공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가장 잘 알 것이고, 그것을 나중에 기록을 관리하는 분이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 법원에서 기록물 생산단계부터 기록관리를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해 가면 정보공개 청구와 알 권리 신장, 판결문을 이용한 빅데이터 산업 등에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당히 큰데 개인정보 보호라는 모호한 이유로 막혀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함.

=> (김형국 연구협력과장) 2007~2008년도에도 법원에서 판결문 공개를 추진하 바 있음. 비실명화해서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공수가 많이 들어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말씀하신대로 법원과 협의해서 아예 생산단계부터 반영하는 것도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됨.

- (장 신 상임연구위원) 비식별화 작업은 이용 시 잘못 전용될 문제가 있는데 그럴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어떨까 함. 이용자들의 보안서약서 작성 등을 통해 연구 목적 이외로 전용되었을 때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봤음.

=> (김형국 연구협력과장) 현재도 비공개 기록물 제한적 열람 시에도 사본을 제공할 수 없지만 비공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게 되면 「공공기록물법」에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그 부분은 확대해서 공익 목적의 경우에는 사본까지 제공해 주되 그 책임은 제공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검토가 필요가 있음. 이 부분은 상한제도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음. 1945년 이전의 역사기록, 해방 이후의 주요 사건이나 국민의 관심이 높은 기록 등은 공익 및 연구 목적일 경우에는 완전 공개를 검토 하고 있으며 추후 관련 연구자 혹은

단체 등과 협의할 계획임.

○ (윤은하 교수) ① 개인정보 때문에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사실상 훼손되고 제한되는 측면이 많음. ‘개인정보의 차등화’는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이들의 범위와 구분 작업을 현장에서 실무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② 비현용 기록과 준현용 기록을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기본적으로 영구 기록은 비공개 상한제도 도입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고 열람서비스를 받는 체제임. 이것은 상한기간 이후에는 기록물의 완전 공개를 전제하고 있고, 이용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취합해서 가져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김형국 연구협력과장) 우리나라가 정보공개와 기록공개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록물 생산 11년차에 기록물이 이관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비현용과 준현용의 이중적 측면이 발생하게 됨. 내부적으로는 30년이 경과하면 「정보공개법」을 떠나서 청구절차 없이도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을 제도화하려고 함. 참고로 외국의 아카이브도 모든 기록물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관 받은 시점에 비공개되어진 기록물은 열람청구에서 접근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음.

③ 정보공개를 공공기록에 국한해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중 민간기록은 개인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공개법」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궁금함. 비현용 기록을 어떻게 이용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공개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큰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함.

○ (박효금 육군기록정보관리단) ① 국가기록원이 내부적으로 구분한 ‘개인 식별정보’와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을 포럼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법적인 용어로 생각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고유 정보는 통상 ‘식별정보’라고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식별정보’는 개인정보로, 나머지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이라는 용어로 좀 더 정확하게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함.

② 36쪽의 <표 6> 국가기록원 소장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 유형에서 징계, 감사, 소송기록 등의 사건기록 및 판결문을 부분공개로 본 반면 43쪽의 <표 11> 30년 공개원칙에 따른 개인정보 기록물 유형의 사안별 공개 현황에서는 인사, 징계, 소송 등 관련 기록물을 공개로 보고 있음. 판결문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부분공개하거나 내용에 따라 공개하기도 하는데 국가기록원이 개인의 민감정보가 포함된 징계나 인사 관련 기록물을 공개로 하게 되면 예하에 있는 기록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피해자나 관련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음.

=> (문현숙 사무관) 개인 신분 기록물의 공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상한기간 지정 안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음.

③ 월남참전자명부, 고엽제 관련 기록물을 모두 공개하라는 하는데 이것들이 이미 알려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해당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미 간의 외교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공익으로 볼 것인가는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노영중 연구관) ① 학술 열람 부분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비공개 기록이라도 사본 제공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비공개 기록물 제한적 열람에 따라서 사본이 제공되지는 않지만 열람만 제공되는 부분이 있음. 이런 부분은 국가기록원이 운영을 더욱 활발히 해야 하는 측면임.

② 30년 경과 공개원칙을 전 공공기관에 적용하면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을 것임. 그런 점에서 비공개 상한기간이 기록물관리법상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적용되는 조항이지만 이를 전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어떨까 함.

=> (김형국 연구협력과장) 법체계 상으로는 30년이 경과하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기록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들도 많아지고 실제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제도와 같이 정비해야 할 부분임.

○ (김유리 주무관) ① 희귀성질병은 유전적 질병 부분뿐만 아니라 전염성

질병 부분도 있음. 적극적 공개를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에서의 수치를 공개해주면서 관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민간에서는 공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함.

② 요즘은 현장 즉석에서 기록물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고, 단순 민원 청구와 혼재되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경우가 많음. 때문에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의 하나로 비슷한 청구가 발생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뚫으로써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은 어떨까 함.

③ 청구자 본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보공개 청구 시 해당 서식에 신청 배경을 작성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함.

=> (김형국 연구협력과장) 정보공개 청구를 받을 때 목적란을 기입하게 되면 서비스를 더 잘 해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처음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해서 서식에서 빠진 바 있음.

=> (박지환 변호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아니면 목적을 불문하고 제공하는 것이 맞고, 목적을 따지게 되면 비공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다른 이유에 의해 결론이 바뀌는 위험도 있을 수 있어서 고민됨.

○ (박효금 육군기록정보관리단) ① ‘○○에 관한 일체의 기록’ 처럼 포괄적인 내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매뉴얼에 있는 정보부존재 기준에 따라 대답하고 있음. 기관 담당자가 이런 매뉴얼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② 기록관리 전문가는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기록물관리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법령 해석도 가능해야 함. 하지만 무엇보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청구인과 기록물을 정보를 생산한 생산부서의 조정자 또는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함.

